

구미시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영 관리 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05. 12. .

제출자 : 구미시장

1. 제안이유

- 기존의 “구미시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의 운영에 있어, 주민소득지원 기금운영은 새마을과에서, 생활안정기금은 사회복지과에서 각각 관리하고 있어 자금관리 및 운영에 비효율적임.
- 통합 운영되고 있는 “구미시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를 폐지하고, 신설조례를 분리 제정하여 자금관리 및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금의 조성 (안 제2조)

- 주민소득지원자금 융자상환금 및 이자수입
- 기금 이자 및 기타수입

나. 가구당 융자한도 및 이율 (안 제5조)

- 융자 한도액 : 2천만원 이하, 2년거치 2년 균분 상환
- 융자금 대부이율 : 연 3%

다. 연체 이자율 조정 (안 제10조 제2항)

- 금융기관의 가계일반대출 연체 이자율 $\Rightarrow$ 10%(정액이율)

3. 참고사항

- 구미시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

구미시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영 관리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주민의 소득수준 향상을 위한 주민소득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시장이 예산의 범위안에 확보한 자금
2. 주민소득지원자금 융자상환금 및 이자수입
3. 기금이자 및 기타수입 등

제3조(융자대상) ①주민소득지원자금(이하 “소득자금”이라 한다)의 융자대상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구를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1. 소득자금지원으로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가구
2. 고소득·고부가가치 소득원을 개발, 소득증대를 이룩할 수 있는 가구
3. 1지역 1명품으로 지정된 품목을 생산하는 가구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를 할 수 있는 경우에도 융자금의 상환능력이 없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융자를 하지 아니한다.

③시장은 제1항의 융자대상가구를 선정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 사항을 조사·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위원회 설치) ①제3조의 규정에 의한 융자대상을 선정하기 위하여 소득자금융자대상선정위원회(이하“위원회”하고 한다)를 설치·운영 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관계공무원 2인을 포함한 5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을 둔다.

③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융자한도 및 이율 등) ①가구당 융자 한도액은 2천만원 이하로 하되 2년거치 2년균분 상환을 조건으로 한다.

②융자금의 대부이율은 연 3%로 한다.

③시장은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환기간을 연장할 때 연장기간의 이자는 무이자로 한다.

제6조(융자금 대부신청) ①융자금의 대부를 받고자 하는 가구의 세대주(이하 “대부신청자”라 한다)는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에 의한 대부신청서를 작성하여 거주지의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대부신청시에는 같은 구미시에 거주하는 세대주 2인의 연대보증인을 세워야 한다.

제7조(대상자 선정통보) 시장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대부신청서를 검토하여 자금지원대상자가 결정되면 지원대상명단과 신청서 및 지원액을 수탁 금융기관에 대출토록 통보하고 신청인에게 융자결정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융자금의 상환) 융자금의 상환은 거치기간 만료후 연1회 균분 상환한다.

제9조(융자금의 상환기한 연장) ①천재지변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내에 상환이 곤란할 경우 시장은 상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연장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재 연장할 수 있다.

③상환의무자가 제1항에 의한 상환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할 때에는 연장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일 30일전까지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④시장은 상환기한 연장이 결정 되면 즉시 그 사실을 상환의무자와 수탁 금융기관에 통보 하여야 한다.

제10조(이자 및 연체이자) ①융자금에 대한 이자는 원금 상환시 그 동안 발생한 이자를 징수한다.

②상환기간을 경과하여 상환하는 융자금과 이자에 대하여는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연 10%의 연체 이자율을 적용한다.

제11조(대출 및 상환금 회수) ①대출금 및 상환금 회수에 대하여 이 조례와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제반사항은 수탁금융기관에서 자체 내규에 따라 처리한다.

②시장은 제6조에 규정에 불구하고 대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탁금융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담보물건을 설정하도록 할 수 있다.

제12조(감독) ①시장은 자금을 융자받은 가구에 대하여 사업추진 상황을 수시 지도·감독하고 수탁금융기관의 자금의 관리상태를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할 수 있다.

②수탁금융기관의 장은 연1회(12. 31) 소득자금 운영 상황을 시장에게 제출 하여야 하며, 시장의 요청이 있을시 수시 제출 하여야 한다.

제13조(특별회계의 설치)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에 주민 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되 이의 관리 및 운영은 금융기관을 지정하여 위탁한다.

제14조(세입·세출) ①특별회계의 세입은 일반회계의 전입금, 회수 용자금, 기금운영에 의한 이자 및 기타수입으로 한다.

②특별회계의 세출은 제3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용자금으로 한다.

제15조(중복용자의 금지) 용자금을 대부받은 가구에 대하여는 용자금 상환이전에 다른사업을 위한 자금을 재차 용자할 수 없다.

제16조(용자금의 반환) 시장은 용자금을 대부받은 가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한 전이라도 용자금 잔액의 전액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사업의 추진실적이 극히 저조할 때
2. 당해 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거나 사업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3. 자금을 용자목적 이외에 사용하였을 때
4. 용자를 받은 자가 시 관할구역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할 때

제17조(용자금 반환통보) 제16조 각호에 의하여 상환기일전에 용자금을 회수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 시장은 지체없이 수탁금융기관에 용자금을 회수토록 통보하여야 하며, 상환통지를 받은 가구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원리금과 이자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8조(준용) 기금의 운영에 있어서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것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등) ① 「구미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 조례」의 폐지와 동시에 그 소관 자금은 이 조례에 의한 특별 회계의 소관 계정으로 이입 조치한다.

②이 조례 시행전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된 주민소득지원 융자금은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된 것으로 보며, 융자금 연체이자율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